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 12. 8 선고 2019가단110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0나12199 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 12. 8 선고 2019가단11003 판결

전문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규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용준

피고(선정당사자) 1. G

2. H

피고(선정당사자)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혁

피 고 1. I

2. J

3. K

변 론 종 결 2020. 11. 17.

판 결 선 고 2020. 12. 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선정당사자) G, 선정자 L, M, N, O은 별지 상속분 계산표(망 P) 기재 상속지분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H, 피고 I, J, 선정자 Q, R, S, T, U, J, V, W, X, Y은 별지 상속분 계산표(망 Z) 기재 상속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1945. 1. 23. 접수 제1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K은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분 계산표(망 AA) 기재 상속지분에 관하여 1944.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망 AA은 1944. 10. 20.경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의 분할 전 토지인 전북 부안군 A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피고 K으로부터 매수하였다. 망 AA은 망 Z, 망 P에게 위 토지 중 각 3분의 1 지분을 명의신탁(중간생략형)하여, 1945. 1. 23.경 망 AA, 망 Z, 망 P이 이 사건 토지를 3분의 1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런데 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피고 K의 소유이다. 따라서 망 Z, 망 P의 상속인들은 피고 K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망 AA의 상속인들은 여전히 피고 K에게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 K을 대위하여 망 Z, 망 P의 상속인들에게 위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 K은 망 AA의 상속인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은 선뜻 믿기 어렵거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허윤범

